

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4. 27.(금) 14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⑥ 의결사항

가. 「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」(대통령 훈령) 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23-088)

o 조경식 국제협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 전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정부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구성,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통령훈령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o 주요 내용

① ITU전권회의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
- 위원장(방통위 위원장), 관련 부처 차관급, 경찰청 차장, 부산시 부시장, 민간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준비위원회를 구성
- 전권회의와 그와 관련된 행사의 계획, 추진사항, 범정부차원의 업무협약 등 전권회의 준비 및 개최 관련 사항을 심의·조정

※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 : 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'경찰청 차장'을 준비위원회에 포함

②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(안 제7조, 제8조)

- 전권회의, ICT전시회 등 관련행사 종합계획 수립·시행, 의제개발, 행사사무국 운영, 전권회의 의장보좌 및 이사국 선거 등 업무 수행

※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 : 행안부 의견을 수용하여 하부조직(당초안 제9조) 관련 조항 삭제 및 관련 조항 자구 수정

③ 안전대책 (안 제11조)

- 준비위원회는 전권회의 관련 시설과 참가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청 등 안전유관기관에 안전대책의 수립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

※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 : 국정원, 행안부, 경찰청 의견을 수용하여 안전대책의 주관 기관을 경찰청으로 하고, 조항명을 '대테러·안전 대책'에서 '안전대책'으로 수정

④ 전권회의 관련 사업 지원 등 (당초안 제18조) : 삭제

※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 : 법제처 사전협의 결과, 사업 지원 등의 사항은 대통령훈령의 규정범위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삭제함

o 향후 추진일정

- 법제처 법제심사 : 5월
- 대통령재가 및 관보게재 : 6월

나. DTV 채널재배치 변경계획(안)에 관한 건 - (2012-23-089)

- 양환정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지상파 DTV 방송국의 채널재배치 일정을 일시재배치 방안에서 권역별 순차재배치 방안으로 변경하는 등 'DTV 채널재배치 변경계획안'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채널재배치 개념 및 현황

- '12년말 ATV 종료시까지 ATV·DTV 동시방송을 위해 부여한 임시채널을 ATV 종료 후 DTV 대역(470~698MHz)내 확정채널로 옮기기 위해 채널을 변경

⇒ '12년말 ATV 종료와 동시에 전국 885개 방송(중계)국 일시재배치

- ※ '08년 DTV 채널배치 계획(방통위 의결) 당시 885국 기준이며, DTV 전환까지 허가 완료시 대상국수 일부 변경 가능

② 권역별 순차재배치 방안

- (재배치 기간) 2013년 10월말까지 완료

- (권역분리 및 재배치순서) 혼신최소화를 위해 ①전라권→②경상권→③수도권·강원·충청권 3권역으로 분리하여 순차적 진행

·혼신분석 결과에 따라, 순차 재배치시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혼신을 최소화하도록 권역분리 및 재배치순서 결정

·동일한 권역에 속한 방송(보조)국은 동시에 채널 재배치 실시

< 지역별 전환일정 >

'12.12월말	'13.6월	'13.7월	'13.10월
아날로그방송 종료	전라권 재배치 완료	경상권 재배치 완료	수도권·강원·충청권 재배치 완료 (임시채널 유지기간 포함)

- ※ 단, 수도권·강원·충청권 권역내 모든 채널이 변경되는 기간급 5개 송신소*의 1개 채널은 시청자 홍보를 위해 3권역 재배치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(1~2주) 유지 후 재배치

* 5개 송신소 : 남산(서울)·광교산(수원)·감악산(파주)·태기산(횡성)·가엽산(충주)

○ 향후 일정

- 470~806MHz 대역 주파수 재배치 변경공고 실시 : '12. 4월
- DTV 채널재배치에 따른 시청자 대책 및 송신시설 변경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: '12. 12월

7] 보고사항

가. 「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서면회의 근거 마련, 의사정족수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칙 일부개정안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① 의사정족수 변경 (안 제6조제4항)

- 통상의 규정례에 맞추어 의사정족수를 "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"에서 "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"으로 변경

현 행	개정안
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	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② 서면회의의 근거 마련 (안 제6조제6항)

-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경미한 안건, 직접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, 위원이 서면회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

현 행	개정안
< 신 설 >	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. 다만, 위원이 서면회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○ 향후 일정

- 입안예고, 규제심사 : '12. 5월
- 위원회 의결, 관보게재 및 시행 : '12. 7월

나. 「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을 김준상 미디어다양성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①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평가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
- 평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,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평가위원이 직무를 대행함

② 평가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통위 의결로 확정함

③ 평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음

④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평가위원이 안전과 관련하여 권리·의무 등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,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 평가위원 스스로도 회피할 수 있음
- 안전의 당사자도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

⑤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)

- 평가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
- 분과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, 이 경우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

○ 향후 추진계획

- '12. 5월 중 :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의견수렴, 전체회의 의결 및 시행

다. 「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예측하지 못한 요금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지의 대상·방법 등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① 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(안 제3조)

- (고지의 주체) 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·무선재판매사업자(MVNO)의 경우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
- (고지의 상대방)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본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함

② 고지대상 서비스 (안 제4조)

- 전체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'필쇼크' 우려가 큰 이동전화, 휴대인터넷(WiBro), 국제전화 및 국제로밍서비스를 고지대상 서비스로 함

- 일반 이용자보다 주로 사업자·기업이 특수목적으로 이용하고 ‘빌쇼크’ 우려가 크지 않은 주파수공용통신(TRS), 무선데이터통신, 무선호출, 위성휴대통신 등은 고지대상 서비스에서 제외

③ 고지방법 (안 제5조)

- 문자메시지,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
- 이동전화서비스는 음성·문자메시지·데이터서비스별로 요금한도 접근시 1회 이상, 한도초과 즉시 문자메시지로 고지
- ‘빌쇼크’ 우려가 큰 데이터서비스(국제데이터로밍 포함)는 한도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 단위로 지속적으로 고지
- 제3자(국제전화사업자 및 해외사업자)로부터 과금자료를 넘겨받아 고지하여야 하는 국제전화 및 국제음성로밍서비스는 월 1회 고지
- 와이브로(WiBro)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데이터서비스에 준하여 고지

④ 기타 차단서비스 제공 등 (안 제6조)

- (차단서비스) ‘빌쇼크’ 우려가 큰 국제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의 경우,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
- (로밍정보제공)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
- (콘텐츠이용료) 애플리케이션, 주문형 비디오(VOD), 게임, 음원 등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

○ 향후 일정

-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: ‘12. 4. 30 ~ ‘12. 6. 15.
- 위원회 의결, 관보게재 및 시행 : ‘12. 6. 16 ~ ‘12. 7. 18.

라.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 관련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

-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에 관한 정책방안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접수를 보류함

마. 「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번호이동성 적용 대상 사업자와 번호이동 신청자격 확대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① 번호이동 의무대상 사업자 확대

- '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(MVNO)'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 이동 의무대상 사업자에 포함

·이동통신망사업자(MNO)↔재판매사업자(MVNO), 재판매사업자(MVNO)↔재판매사업자(MVNO)간 번호이동성이 시행되도록 함

②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게 번호이동 신청자격 부여

- 후불↔선불간, 선불↔선불통화서비스간 변경하면서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-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위해 번호이동성관리기관(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)에게 선불가입자 번호DB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,

·이동전화사업자에게 자사의 선불가입자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등록·변경 처리 결과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

③ 번호이동 신청절차 개선

- 번호이동 신청방법을 '직접 방문' 이외에 '온라인 영업' 등 비대면 채널로 확대

④ 번호이동 시행시기

- 재판매사업자(MVNO)의 번호이동은 즉시 시행
- 선불통화서비스의 번호이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

○ 향후 일정

- 2012년 5월 : 행정예고, 규제개혁위원회 심사
- 2012년 6월 : 위원회 의결 및 관보 게재

Ⅷ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. 5. 4(금).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5:20)